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7 발의연월일: 2020. 6. 23.

발 의 자:유동수・이상직・이개호

김교흥 · 정춘숙 · 박찬대

허종식 · 김경협 · 인재근

이원욱 · 송영길 의원

(119]

제안이유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 는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음(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일 부와 비상장주식 거래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됨).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있음.

또한,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한편, 금융투자상품인 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

과되고 채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는데, 자본소득 간 과세 방식이 달라 과세의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채권도 포함함으로써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채무증권을 정의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채무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안 제88조제9호 및 제94조제1항제6호 신설).
-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대주주의 주식등 양도,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서 모든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확대함(안 제94조제1항제3호).
- 다. 주식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 라. 채무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함(안 제104조제1항제13호 신설).
- 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대상에서 주식등 양도소득, 파생상 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을 제외함(안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 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채무증권 양도 소득을 포함함(안 제118조의2,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
- 사.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채무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안 제174조의2).
- 아.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세수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도입함(안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동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 안」(의안번호 제2100908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904호)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100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채무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 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말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를 "주식등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채무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 주식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무증권 채무증권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02조제1항제2호 중 "제94조제1항제3호"를 "제94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양도차손금액 중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의 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제1항제2호 중 "제94조제1항제3호"를 "제94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1) 중 "중소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무증권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3호·제5호 및 제6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 호"를 "제1호"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채무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5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

제118조의7제1항제2호 중 "제118조의2제3호"를 "제118조의2제3호·제4호"로 한다.

제119조제9호나목 중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4조의2의 제목 중 "파생상품 또는 주식"을 "주식등·파생상품등 또는 채무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주식등·파생상품등 또는 채무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 하며, 같은 조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각 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특례) ① 제94조제1항제 3호의 개정규정 및 제104조제1항제1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 2.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의하여 양도하는 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주권비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식등② 제1항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중소기업의 주식등

	2021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7] () -] -]	1일부터	1일부터	1일부터	1일부터
적용기간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12월	2024년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적용비율	100분의 2	100분의 4	100분의 6	100분의 8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2021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정요기가	1일부터	1일부터	1일부터	1일부터	
적용기간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12월	2024년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적용비율	100분의 4	100분의 8	100분의 12	100분의 1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제88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채무증권"이란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u>을 말한다.</u>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	
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u>	3. <u>주식등의</u>
<u>해당하는 주식등의</u> 양도로 발	
생하는 소득	
<u>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u>	<u><삭 제></u>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	
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	
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	
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기에 따 른 증권시장(이하 "증권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 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 5 및 제360조의22에 따 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 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 <삭 제> 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 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

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 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 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4. • 5. (생략) <신 설>

② (생략)

-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1. 2. (생략)
 -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 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 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

- 4. 5. (현행과 같음)
- 6. 채무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 ② (현행과 같음)

- 1. 2. (현행과 같음)
- 3.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 식등

주식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 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 가한 가액

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 전·이후 각 2개월"은 "양도 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 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 <삭 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 3조제1항제1호다목을 준용하 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 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 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 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 7. (생 략)

<삭 제>

6.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 ⑥ (생 략)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 전 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 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 지 아니한다.

- 1. (생략)
- 2. <u>제94조제1항제3호</u>에 따른 소 득
-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 득

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
무증권
채무증권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
산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94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6호
<u> </u>
<u> </u>
②
<u> </u>

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 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 하다.
 - 1. (생략)
 -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 득
 -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 | <삭 제> 득
 - ② ③ (생 략)
-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

른	양도	차손	금액	중	해딩	}	
<u>기</u> 경	간의	양도	소득	- 금인	무을	초고	사하
여	공저]되지	아	니한	금호	백은	해
<u>당</u>	과서	기간	의	가음	과세	기간	<u></u> 上부
터	3년	이내	에	끝나	는 2	}]	
7] {	간에	이월	하여	공지	비한디	₹.	
3	제2	항에	따흔	를 공	7세의	_] 별	낭법
		도소득					
고i	크 하 아	여 대	통령	령으	.로 >	 정 한	 :다.
		양도소					
	(혀 ㅎ	생과 >	간으`)			
		o 기 4조제	′		. 제도	. ㅎ	可
	<u> </u>		<u> 10</u>	키	<u>- / 1 C</u>	/-L-	<u></u> _ <u> </u>
	IIU포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 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 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 1. ~ 10. (생략)
-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 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 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생 략) 나. (생 략) 12. (생 략) <신 설>

1. ~ 10. (현행과 같음)
11
가
1)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3.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무증권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

② ~ ⑧ (생 략)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 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 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 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 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 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 期)의 말일부터 2개월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 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 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3개월
- ② ③ (생 략)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의	20

<u>의 20</u>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
신고) ①
 제3호·제5호 및
제6호
<u>~110.4.4</u>
1. (현행과 같음)
 <삭 제>
0 24 7
3. <u>제1호</u>
②·③ (현행과 같음)

산) ① (생 략)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 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 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 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하다.

- 1. 2. (생략)
-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times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 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 세 액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따른 세율

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각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범위에서 제외한다.

1. ~ 3. (생 략) <신 설>

5. (생략)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1. ~ 3. (현행과 같음)
4. 채무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
그 이 이 그 것이 이 그 그 된 이
하는 소득
5. (현행과 같음)
5. (연영각 崔吉)
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2.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기

-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 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1. (생략)
- 2. <u>제118조의2제3호</u>에 따른 소 득
- ② (생략)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 저 등)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등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다.
 - 1. ~ 8의2. (생략)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1.•2. (현행과 같음)
3.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자
<u>산</u>
제10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u>세율</u>
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u>.</u>
1. (현행과 같음)
2. <u>제118조의2제3호·제4호</u>
② (현행과 같음)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
득)
1. ~ 8의2. (현행과 같음)
9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 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 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생략)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가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 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출자지분

10. ~ 12. (생 략) 10. ~ 12. (생 략) 10. ~ 12. (생 략) 10. ~ 17. (과생상품 또는 주식 제17. 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 는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출 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 --

-,
·
가. (현행과 같음)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
권시장"이라 한다)
10. ~ 12. (현행과 같음)
제174조의2(주식등·파생상품등 또
는 채무증권의 거래내역 등 제
출)

투자업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u> -----<u>주식등·파생상품등 또</u>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 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 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 <삭 제>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 료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 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 <삭 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 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 는 자료

는 채무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 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단서 삭제>

<삭 제>